

새로운 상표제도(1)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mail: shyun@email.hanyang.ac.kr

김상규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론

정보사회는 현대사회를 규정하는 여러 단어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또한 미래 사회를 예정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시대를 규정할 만큼 현대사회에 있어 정보는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더욱 강조될 것이라 하겠다. 일부 계층에 독점되었던 지식이 민주정치이념의 확산과 함께 모든 계층에 개방되었으며, 정보통신 매체의 발달로 국경을 초월한 정보의 공유를 형성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무질서하게 산재해 있던 과거의 지식이 새로이 정리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가 지적 자원이라 하겠다. 즉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 정보는 자본주의적 경제질서 및 산업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생산요소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지적 재산 내지 재산적 정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과거 산업재산권 내지 공업재산권이라 불리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과 저작권, 영업 비밀 내지 비공개 정보 등 지적 재산은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보호 역시 함께 강화되고 있다. 과거 단순한 아이디어 내지 발상으로 간과되던

목 차

I. 서론

II. 상표관련 국제조약

III. 상표제도의 의의

IV. 상표의 개념

V. 새로운 상표

VI. 결론

<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



것들이 지적 재산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으며, 경쟁질서의 강조와 함께 상표 역시 식별력에 착안한 영업상의 신용 등을 이유로 그 범주를 확장하고 있다. 그 보호의 내용에 있어서 역시 물권적 청구권에 비교될 수 있는 보호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침해에 대한 사후적 구제 역시 강력하게 인정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 내지 비공개 정보는 개인의 문제에서 법질서가 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되었다.

지적 재산의 한 형태로서의 상표 역시 이러한 시대 변화의 예외이지는 않다. 오히려 상표가 경제사회의 발전과 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과 관념이 변화하여온 사회적·역사적 존재임을 인식할 때 상표와 상표제도는 지적 재산과 지적 재산보호제도의 변화를 이끈다 하겠다. 예컨대 상표는 고대에 있어서는 상업적 정직과 성실(commercial honesty and integrity)을 나타내는 거래상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고, 중세에 있어서는 인격권적 성격의 재산권으로 역할하기도 하였으며, 길드 조직 내에서는 원료의 품질 또는 기술의 미흡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책임요소로서 역할하기도 하였다. 또한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에 의한 근대자본주의사회가 성립하면서 대량 생산된 규격화 상품의 유통과 유통과정의 분화 및 길드 조직의 붕괴에 따른 영업자의 자유경쟁을 배경으로 상표는 근대적 의의에 있어서 상표식별표지로서의 적극적 기능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부정경쟁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령의 일부로서 또는 독립된 상표법의 형태로서 상표제도를 두어 그 보호를 의도하였다.

이와 같은 상표제도는 현대사회에서 국제화·통일화의 경향에 있다. 즉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시작한 산업체산권제도는 자국의 이익의 우선되며, 그 실시나 보호에 있어서 역시 속지주의의 원칙이 관철되었다. 그러나 국제적인 물적 인적 교류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 경제활동의 국제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거래 발전, 광범위한 기업 활동 등은 새로운 상표 제도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시장의 확산과 더불어 그 어떤 산업체산권보다 상표는 그 보호의 지역적 범위를 넓히고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표의 보호를 강화하며, 그 권리 취득을 위한 절차와 권리 이용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법 개정이 각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표는 국내생산자가 국제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는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이 국제무역이 활발한 시대에 있어서는 상표의 국제적 보호는 본질적 요구라고 한다는 견해까지 있다.¹⁾ 이에 오늘날의 상표보호는 국제적인 규모를 취하고 있다. 즉 상표의 보호는 다자간 조약을 통해 각국 제도의 평준화를 도모하는 국제조약의 체결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 조약들은 다시 각국에 규정 준수를 위한 법 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변화들에 있어 우리의 상표법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하겠다. 이에 우리의 상표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년에 법률 제71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아래 '사회경제적인 요청과 국제조약에의 가입 등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10차례에 걸친 개정을 하였다. 특히 1997년 7월 30일로 국회를 통과·확정됨으로써 작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은 상표보호 관련 국제조약 가입의 선행조건이행, WTO/TRIPs 협정 비준에 따른 미비한 국내입법조치, 선진제국과 통상문제화된 저명상표의 보호강화와 모방상표의 처리문제를 비롯하여, 심사기간의 단축과 심사적체의 해소, 출원인 편의주의로의 개선, 상표선택기회의 확대를 통한 경제활성화에의 기여, 불합리한 제도의 폐지와 판례의 반영이라는 가치 하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10차례에 걸친 지난 상표법의 개정이 우리

1) 이상정, "유럽연합의 상표법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1997. 여름호, 51-52면.

의 실정과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 수반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오히려 시대 사회적 요청이라는 미명 아래 외국의 법률을 도입하거나 도입하도록 강제된 것이 아닌가 싶다. 예컨대 현 행법에서는 외국의 압력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규정에 '저명상표 보호'를 위한 규정(제7조 제1항 12호)을 신설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상표법 규정(동조 동항 10호)만으로도 충분한 屋上屋的 인 발상의 규정이다. 이러한 불합리는 상표제도 전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근시안적으로 대처함에서 비롯한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의장법이나 실용신안법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²⁾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법률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연구가 미약한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 상표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그 제도적 의의 내지 역할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표제도에 대한 진지한 이해 부족은 입법의 미비나 법률 제도의 운영 등의 모순 등으로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상표제도의 운영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표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먼저 상표제도와 관련하여 국제조약을 살펴본다(제2절). 즉 상표의 국제적 보호 내지 상표법의 국제적 통일화 경향을 주도하는 국제조약들을 판단함으로써 우리 상표법의 운영방향을 판단한다. 다음은 상표제도의 의의 내지 상표보호의 본질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표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상표의 기능을 판단하고 이를 전제로 상표제도의 의의를 판단한다(제3절). 이러한 논의를 전제로 상표 개념을 판단한다. 즉 상표법의 보호대상인 상표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새로운 상표제도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이해를 시도하며, 이를 위해 현행 상표법상의 법률적 상

표 개념과 그에 대한 입법례를 판단한다(제4절). 마지막 제5절에서는 새로운 상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새로운 상표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냄새상표, 소리상표, Internet Domain Name, 타이프페이스 등을 살펴본다. 함께 이미 우리 상표법에 도입되었으나 아직 그 운용에 있어 논의가 충분하지 못한 입체상표나 색채상표 등을 살펴본다. 특히 입체상표나 색채상표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기능성이론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특허법이나 의장법 등과의 한계 설정을 도모한다.

II. 상표관련 국제조약

상표제도의 국제화·통일화 경향에 있어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예컨대 우리 경제의 국제화와 교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마드리드 의정서에의 가입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의 기업과 출원인은 국외에서 보다 간이하고 경제적으로 상표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표에 관한 정보교류의 촉진으로 상표관리전략의 수립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표·의장제도의 선진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외국의 상표·의장제도 중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입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상표 제도와 관련한 국제조약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제적인 상표의 보호와 관련한 노력은 1883년 체결된 산업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of March 20, 1883)이나 1891년에 체결된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협약(MADRID

2) 예컨대 입체상표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되기 시작한 '기능성' 이론이 상표법과 다른 산업재산권법과의 한계 설정을 위한 한 시도라 하겠다.



AGREEMENT Concern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등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최근에는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친 보호의 기본원칙을 선언한 WTO, TRIPs 협정도 발효되었으며, 상표국제등록제도에의 가입을 유인하기 위한 Madrid 의정서가 발효되었고, 1994년 10월 27일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상표법통일화조약(TLT: Trademark Law Treaty)이 체결되었다. 유럽 공동체 역시 공동체 시장의 성립에 대비하여 Council Directive 및 Council Regulation을 정리하여 통일된 상표보호를 기하고 있다.

1. 파리조약

산업재산권의 다국간 체제를 확립한 파리조약은 기존의 속지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국제협조체제를 형성하는 기본구조를 취하고 있다. 상표와 관련하여 파리조약은 그 보호대상으로서 상표를 명기한 제1조 제2항과 제6조 이하의 상표 보호 관련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 내국민대우의 원칙, 텔켈(telle quelle) 조항의 채택, 우선권제도 등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파리조약에서는 상표의 정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않고 각국의 해석에 위임하고(제6조 제1항), 이에 대한 상표보호의 독립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동일한 상표가 둘 이상의 동맹국에 있어서 등록출원되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그들은 상호 독립적이고, 출원절차, 등록요건, 권리의 발생·이전·효력 등에 대해서 당해 상표등록을 부여하는 각 동맹국의 법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취급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유통이 국제적인 규모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본국에서 등록된 상표가 다른 나라에서

도 그대로 보호되는 것이 상표의 국제적 성격에서 생각하면 극히 이상적이다. 이에 상표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외국등록상표에 대한 특별규정을 설치하고 있다(제6조의 5). 즉 '본국에 있어서 정식으로 등록된 상표는 이 조약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동맹국에 있어서도 그대로(telle quelle) 등록이 인정되고 보호된다'는 규정을 두어 상표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해석에 있어서 방식심사만 행하면 보호를 요구하는 상표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 심사도 하지 않고 등록이 인정된다는 설과 각국의 국내법령에 있어서 상표 개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설이 대립한다.³⁾

이러한 파리조약은 각국 법제의 相異를 전제로 속지주의를 인정한 위에서의 조정법적인 조약에 머물러 있어 당초의 理想인 세계 통일법을 실현하는 것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약의 개정에 대해서는 전원일치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국간에 합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도 모든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타협의 산물로서의 개정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조약의 탄력적인 운용의 여지를 남겨 산업재산권보호의 규정에 저촉하지 아니 한 별도로 동맹국 상호간에 산업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특별동맹의 체결을 행할 권리의 유보를 인정하고 있고(파리조약 제19조), 이를 근거로 하여 상표에 관하여서도 그 국제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몇 개의 특별동맹이 체결되어 있다.

2.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

파리조약에 의해 각국에서 보호를 받으려면 6개월의 우선권 혜택이 있을지라도 결국 희망하는 개별국

3) 각국 법제의 相異를 전제로 그들의 조화를 도모하려고 하는 파리조약 본래의 취지에서 보아 상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각국의 자유이어서 상표의 개념에 대하여 당해 동맹국에 있어서 국내법령과는 상이할 해석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하겠다.

가에 일일이 출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단일기관(WIPO)이 단일언어와 일원화된 절차를 통하여 동맹국간 상표출원을 관장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간 상표 출원과 등록을 용이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었고, 파리조약 제19조의 특별협약으로서 1891년 4월 14일 상표의 국제출원제도를 창설하는 마드리드 협약이 체결되었다. 마드리드 협약은 체약국의 국민은 본국에 있어서 등록된 표장을 기본등록으로 하여 통일된 절차에 의하여 복수의 가맹국에 있어서 표장의 국제등록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 각 가맹국에 있어서 당해 표장이 당해국에 직접 출원된 경우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마드리드 협약 경로로 출원된 표장이라도 당해국에 직접 출원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등록된다. 즉 각국에 있어서 실제로 등록되는가 아닌가는 각국이 독자의 법률에 기초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일단 自國이든 居住地國이든 등록을 필요로 하므로 당해 국가가 등록을 위하여 실질심사를 하는 나라라면 심사기간 때문에 파리조약의 우선권(6개월)을 거의 이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특히 최초에 출원한 국가, 즉 국제출원의 기초가 된 국가에서 5년 이내에 취소 등으로 失效되면 모든 국제등록이 무효가 되는 집중식 공격(Central Attack) 방식이 본 협약에 대한 가입의 기피 원인이 되고 있다.

3. 상표등록조약 (TRT:Trademark Registration Treaty)

상표등록조약은 본국에서의 등록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심사국, 특히 미국과 영국의 반대를 피할 수 있도록 1973년에 만들어진 조약이다. 마드리드 협약과 같이 표장

의 보호를 요구하는 국가의 국내 법령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범위에 있어서 당해국의 국내 등록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미국 특허상표청과 WIPO의 지지를 얻었으나, 集中式攻擊의 존재와 國際的審查基準의 미비를 이유로 비준국이 소수이며 그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4. 마드리드 의정서

상표등록조약이 실질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 각국의 주요한 목적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약의 시스템을 확장하는 것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러한 시도의 일환으로서 PROTOCOL에 의한 개정을 통하여 기존 마드리드 협약 加入國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아직 가입하지 않은 나리를 유인하려 하였다. 즉 마드리드 의정서 제9조의 6은 당해 국제출원이나 등록의 본국관청이 의정서와 협약의 양당사자인 경우는 의정서의 규정은 의정서와 협정의 양당사자인 다른 나라의 지역에는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의정서의 효력이 의정서에만 가입한 나라 사이나 또는 의정서에 가입한 나라와 의정서와 협정에 가입한 나라 사이에 미치도록 하였으며, 의정서의 당사국은 마드리드 동맹 및 총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였다.⁴⁾

마드리드 협약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표의 국제등록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마드리드 의정서는 협약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국가출원으로 충분하며 반드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국이 등록을 위해 실질심사를 하고 있더라도 국제출원에는 크게 지장이 없으며, 파리조약상의

4) 다만 의결권은 서명한 조약 내용에 포함된 주제로 한정된다.



우선권주장도 가능하게 된다.

둘째 마드리드 협약이 규정하던 집중식 공격의 불합리를 보완하였다. 즉 기본 출원·등록이 무효·취소되더라도 국제등록을 가진 자는 국제등록의 우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3개월 이내에 국가등록을 위하여 지정한 각지정체약국의 국내출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단 본국출원에 문제가 생겨도 3개월 이내에는 우선권을 그대로 가지면서 이미 국제출원에서 지정한 국가라면 개별국가에 다시 출원할 수 있다.

셋째, 지정국에 있어 상표등록의 거절이나 잠정적 거절을 할 수 있는 기간을 18개월로 연장하였다. 또한 18개월의 제한기간 이후에도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다고 앞의 18개월 이내에 국가 특허청이 국제사무국에 알려주면 이의신청에 기초한 거절에 대해서는 附加期間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지정국이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에 있어서 수수료의 총액과 동액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사용언어도 프랑스어이외에 영어를 추가하였다.

5. 상표법통일화조약 (TLT:Trademark Law Treaty)

이 조약은 제도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및 국제적 조화를 목적으로 1994년 10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각종 증명서 요구의 간소화, 다류 1출원, 다건 1통 방식의

채용, 출원분할, 경신등록의 실체심사금지 및 등록의 동일한 오류정정, 방식심사의 의견 진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6. TRIPs 협정

GATT/UR의 체결로 인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WTO(세계무역기구)가 정식으로 발족하고, 그 부속서로 상품무역에 관한 사항이외에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이 확정되었다. TRIPs 협정은 특허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칩법, 영업비밀 등 8개 분야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최소한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제2장 상표(Trademarks) 규정에서 상표의 보호와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 TRIPs 협정은 상표의 의의, 상표권의 내용, 보호기간, 사용의무, 사용권 설정 및 양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2조 지적재산권 협정에서는 본 협정의 보호기준, 시행절차, 권리획득 및 유지절차와 관련하여서는 파리조약 제1조 내지 제12조와 제1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표에 관한 파리조약의 조항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7. 유럽공동체(EC)의 동향⁵⁾

공동체 상표규칙에 기초한 통일적인 상표보호계획과 더불어 EC 이사회는 1988년 12월 21일 회원국의 국내상표제도를 조화 접근시키는 지침(Council

5) 유럽공동체의 상표제도는 공동체상표제도와 국별상표제도의 병존이라는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개별국가의 상표제도와 병존하는 공동체상표제도를 창설하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국 상표법의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특허보호와 관련하여 유럽특허청을 통한 출원과 국별 특허청을 통한 출원이라는 2원적 제도의 병존과 이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유럽 특허제도가 성공하게 된 요인이라고 되었다는 경험과 실제 EU전역에서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상표는 비교적 적고 80%이상의 상표가 소수의 국가 내지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만 보호받으면 충분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에 기인한다.

Directive)을 채택하면서 역내 각국의 국내법의 조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내법의 개정을 행하였다. 즉 EC 이사회는 상표의 보호와 관련하여 회원국간의 상표법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상품 및 서비스의 자유로운 거래가 방해를 받고 또한 EU 공동체 시장 내에서의 경쟁이 왜곡될 수 있음을 알고, 지역 시장의 설립과 그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회원국의 법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유럽공동체이사회에서는 1988년 12월 21일, 상표에 관련된 회원국법률을 접근시키기 위한 이사회 지침⁶⁾을 마련하였으며, 1993년 12월 20일 공동체상표의 창설을 위한 이사회규정⁷⁾을 발표함으로써 공동체상표법(Community Trade Mark : CTM)이 성립되어 1996년 4월 1일부터 CTM출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이사회 지침

EC 이사회는 1988년 12월 21일, 1992년의 EC 단일시장을 대비하여 EC 상표법을 접근시키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였다.⁸⁾ 이것은 모든 등록상표가 회원국의 상표법에 의하여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각 회원국은 이 지침과 자국 상표법이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이 지침에 따라 개정하여

야 하였다. 이 지침은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회원국의 국내법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강행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침의 내용에 따라 개정되어 상호접근을 보도록 하였다.⁹⁾ 즉 이 지침은 EU 각국의 상표법을 접근시킨다고 하여도 전규정에 걸쳐 전면적인 조정을 의도하지는 않았다.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공동체 상표제도가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가운데 “역내 시장의 기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내의 법규정”으로 한정하여 강행규정을 두었다. 그리고 많은 선택규정을 두어 회원국에 따라서는 자국 실정에 맞지 않는 특정조항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침이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전적으로 회원국의 입법에 맡겨진 영역으로 하고 있어 현재에 있어서도 EU 각국 상표법의 차이는 계속되고 있다.¹⁰⁾

(2) 이사회 규정¹¹⁾

유럽 공동체는 1993년 12월 20일 13장 143조로 구성된 방대한 내용의 공동체상표에 관한 이사회 규정을 합의하였다. 공동체 전체의 상표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이 규정은 공동체 전역에서 유효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개별 회원국의 국내 상표와 병존하게

6) First Council Directive 89/104 of 21 December 1988 to approximate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rade mark

7) Council Regulation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8) 이 지침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설립을 위한 협약’ 제 100조 a에 근거한다.

9) 상표의 형태(§2), 상표등록거절사유 및 등록무효사유(§3(1) (a)-(h), §4(1)(3)), 상표권의 효력(§5(1)), 상표권 효력의 제한(§6), 권리 소진에 관한 규정(§7), 권리실효에 관한 규정(§8), 상표등록취소(§12), 상표의 일부거절, 무효, 취소에 관한 규정(§14) 등을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다.

10) 당시 EC 위원회 등은 가급적 많은 조항, 특히 CTM제도에 포함될 내용에 대하여는 CTM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선택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또 지침을 채택한다고 할 때에도 모조리 문자 그대로 국내입법에 반영시켜야 하는지, 또는 보다 융통성있게, 예컨대 국내법문상에 없는 내용일 경우에는 당해 국내법원이 지침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나라에 따라 해석이 구구할 수 있으므로 EC 위원회 등은 전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Will the EC Ever Sing in Tune? - Ask ECTA,” Trademark World(1990.8), 30면 이하). 이상정, “유럽연합의 상표법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1997 여름호, 83면 각주 72)에서 재인용.

11) 상표권의 역내 통일화를 위한 EC의 노력은 1960년대부터 발견된다. EC내에서의 일관적 상표작업확립을 위해 1964년 유럽상표조약의 임시조안이 마련되어 1976년 EEC 상표창설에 관한 각서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1980년 일원적 공동체상표에 관한 잠정 규칙안이 도출되고 이를 수정하여 1984년말 이사회에 의해 공포되었으며 1988년 Consolidated text가 마련되었다. 이를 기초로 최종 수정안(COM (92) final)이 1993년 12월 20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된 것이다.



될 공동체 상표를 확립함으로써 공동체내의 거래를 단순화하고 합리화하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또 한 이 규정의 실체법적 내용은 1988년에 성립된 이사회 지침과 거의 유사하게 함으로써 규정과 지침에 따라 성립된 개별국가의 상표법과 실체법적 측면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하였다.

이 규정을 통해 출원인은 공동체 회원국에서 상표를 개별적으로 출원할 필요 없이 EU 전역에 효력이 있는 공동체 상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동체 상표제도는 마드리드 협정이나 마드리드 의정서와 양립되도록 마련하여 공동체 상표출원이 마

드리드 협정이나 동 의정서에 의한 국제등록출원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우리는 상표 관련 국제조약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상표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을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의 창설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상표제도의 운영은 전제적으로 상표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한다. 이에 다음에서는 상표제도의 의의를 판단한다. <계속> 발특 9304

가입을

환영합니다

'99년 3월 중 본회가입 업체

회원명	대표자	가입년·월·일
(주)삼명코리아	김 규 염	1999년 3월 16일
주소	전화번호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120-65 대산벤처타운	(02)484-2311	

회원명	대표자	가입년·월·일
태성엔지니어링	김 인 철	1999년 3월 22일
주소	전화번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02-7	(032)656-7439	